<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.>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-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,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,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감액처리에 대한 설명

[감액]

보험료, 보험금,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(이에 따라 보험료,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(해약환급금)도 줄어듭니다.)

[해지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

[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]

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 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
| 구 분 | 감액전 | 감액후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보험가입금액 | 1,000만원 | 500만원 | |
|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| 400만원 | 200만원 | |
| 감액할 때 지급금액 | 200만원 (= 400 | 만원 - 200만원) | |

계약자적립액

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

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[㈜]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㈜ 산출기초율 :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, 이율 및 위험률 등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

다.

- 1. 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.
 다만,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(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- 2.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
- 3.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
- ②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특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-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 따라 계산합니다. 다만,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

- 1. 이 특약의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"일반형"보다 낮은 보험료 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.
- 2. 이 특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

다.

3.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. 다만,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※ 해약환급금

= 납입보험료 누계액^(주①) × "일반형"의 해약환급률^(주②)

(주)

- ① 납입보험료 누계액: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특약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「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 x 보험료 납입 기간 x 12」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"일반형"의 해약환급률: "일반형"의 납입보험료 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며, 소수점 4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하고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- 4. 제2-3조(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)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"3"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.
- 5. "1" 및 "3"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"일반형"은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.
- 6.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(환급률 포함) 수준을 "일반형"과 비교·안내해 드립니다.
-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<부표1-1>"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"에 따릅니다.
-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

부표2-1

보험금 지급기준표

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| 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| |
| | 일 이후에 "기타피부암", "중증이외 | |
| 소액암 | 갑상선암", "제자리암", "경계성종양", | 특약보험가입금액의 |
| 진단급여금 | "대장점막내암" 또는 "비침습방광암" | 100% |
| |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(다만, 각각 | |
| | 최초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) | |

주) 1. 「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금 지

-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」 또는 「주계약이 해지, 무효,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」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- 2. 이 특약의 "중증 갑상선암"은 "갑상선암"에 해당하는 질병 중 "수질성암 (Medullary carcinoma)" 또는 "역형성암(Anaplastic carcinoma)"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, "중증 이외 갑상선암"이라 함은 "갑상선암"에 해당하는 질병 중 "중증 갑상선암"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.
- 3.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부표2-2

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(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)



별첨2 [표 6-1] 참조

부표2-3 |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



별첨2 [표 7] 참조

부표2-4

갑상선암 분류표



별첨2 [표 8-4] 참조

(간편)[기본]남녀특정암진단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





약 관 목 차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참조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제2-1조의2 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

제2-1조의3 "대장점막내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

제2-1조의4 "비침습방광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제2-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제2-5조 사고증명서

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제2-9조의2 "특약의 무효"에 대한 특칙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- [부표2-1] 보험금 지급기준표
- [부표2-2]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(암) 분류표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)
- [부표2-3] 유방암 분류표
- [부표2-4] 전립선암 분류표

(간편)[기본]남녀특정암진단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

- ※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일반심사형의 경우: "(간편)" 부분이 없습니다.
- 일반형의 경우: "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" 부분이 "(무배당)"으로 변경됩니다.
- ※ "간편심사형"과 "일반심사형"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- ※ 이 특약명 "(간편)[기본]남녀특정암진단특약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"에서 남녀 특정암이라 함은 "여성유방암" 및 "전립선암"을 말합니다.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제1-1조부터 제1-13조까지를 이 특약 "제1편 일반사항" 으로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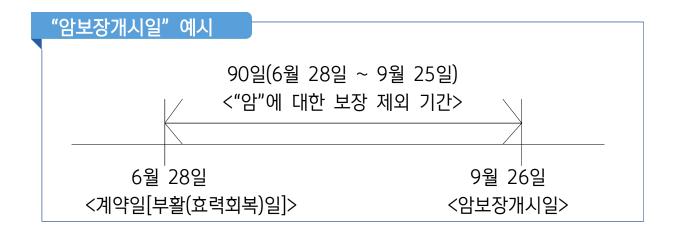
※ [특약 약관] "제1편 일반사항"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또한,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제2-1조의2(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) 제1항에서 정한 "암"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, 계약일[부활(효력회복)일]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.



제2-1조의2 "암"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

- ① 이 특약에 있어서 "암"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〈부표2-2〉 "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(암)분류표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)"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.
 - 1. 분류코드 C44[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(암)]에 해당하는 질병
 - 2. 분류코드 C73[갑상선의 악성신생물(암)]에 해당하는 질병
 - 3. 제2-1조의3("대장점막내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)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
 - 4. 제2-1조의4("비침습방광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)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
 - 5. 전암(前癌)상태(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,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)
- ② 이 특약에 있어서 "여성유방암"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"암" 중 <부 표2-3> "유방암 분류표"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며, 여성 피보험자에 한합니다.
- ③ 이 특약에 있어서 "전립선암"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"암" 중 <부표 2-4> "전립선암 분류표"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.
- ④ 이 특약에 있어서 "기타피부암"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 인분류 중 분류코드 C44[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(암)]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.
- ⑤ 이 특약에 있어서 "갑상선암"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C73[갑상선의 악성신생물(암)]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.

- ⑥ "암", "기타피부암" 및 "갑상선암"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, 이 진단은 조직(fixed tissue)검사, 미세바늘흡인검사(fine needle aspiration biopsy)[다만, "갑상선암"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(fine needle aspiration)] 또는 혈액(hemic system)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"기타피부암" 및 "갑상선암"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.
- ①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"암", "기타피부암" 및 "갑상선암"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

암

악성신생물(암)에서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, 비침습방광암 을 제외한 암

유의사항

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C77~C80[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(암)]에 해당하는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 일차성 악성신생물(암)을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여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(암)(C77~C80)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

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 기준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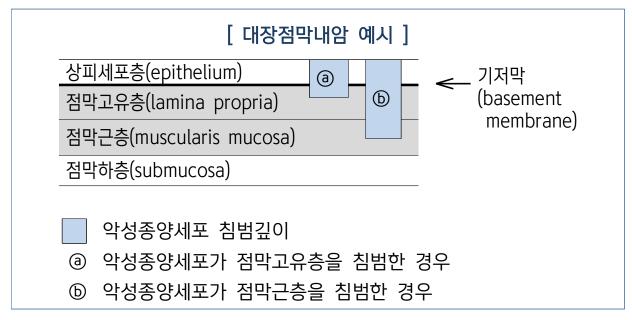
- · C73[갑상선의 악성신생물(암)]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[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(암)]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[갑상 선의 악성신생물(암)]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.
- · C50[유방의 악성신생물(암)]이 폐로 전이되어 C78.0[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(암)]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[유방의 악성신생물(암)]으로 진단확 정된 것으로 봅니다.
- · C16[위의 악성신생물(암)]이 뇌로 전이되어 C79.3[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(암)]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[위의 악성신생물(암)]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.

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

- ·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
- ·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

제2-1조의3 "대장점막내암"의 정의 및 진단확정

① 이 특약에 있어서 "대장점막내암"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 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(암)(C18 ~ C20)에 해당하는 질병 중 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(epithelium)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 막(basement membrane)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(lamina propr ia) 또는 점막근층(muscularis mucosa)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(sub mucosa)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, 대장은 맹장, 충 수, 결장, 직장을 말합니다.



② "대장점막내암"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, 이 진단은 조직(fixed tissue)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(fine needle aspiration biopsy)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"대장점막내암"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